

2022년 1월 경상남도 반사회 홍보목록

연번	홍보내용	담당부서	페이지
1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 안내	감염병관리과	1
2	2022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 안내(신규)	사회혁신추진단	7
3	2022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이용 안내(신규)	노동정책과	9
4	2022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안내	신산업연구과	11
5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및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안내	건축주택과	13
6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 안내	건축주택과	15
7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토지정보과	16
8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토지정보과	18
9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안내	토지정보과	20
10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안내	환경정책과	21
11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주민 협조(신규)	기후대기과	27
12	미세먼지 비상 시,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안내	기후대기과	29
13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동물방역과	31
14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신규)	정보담당관	33
15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안내(경남스마트쉼센터)	정보담당관	35
16	태풍·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신규)	자연재난과	36
17	2022년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영아수당 신청하세요(신규)	가족지원과	38
18	'맘편한 임신'원스톱 서비스 시행 안내	가족지원과	40
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안내	가족지원과	43
20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방법 등 안내	아동청소년과	45
21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결함 보상) 신청 안내	에너지산업과	48
22	에너지 절약하고, '경남사랑상품권' 받아보세요!	에너지산업과	52
23	경남 마산 로봇랜드 방문·이용 및 홍보 협조	전략사업과	54
24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신규)	농업정책과	5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행동수칙 안내

(자료제공: 복지보건국 감염병관리과 ☎ 055-211-76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 행동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 일반 국민 예방행동수칙은?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 항상 마스크 착용!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하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주요 Q&A

<Q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원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A1 : 코로나19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이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나며 폐렴, 호흡곤란 등 중증 경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Q2>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A2 :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A3 :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와 다른 사람이 약 2m 이내로 밀접하게 접촉할 때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들의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Q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A4 : 백신은 2021년 2~3월부터 단계적 시행 중입니다. 3분기까지 일반 국민들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정도에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백신공급, 접종시행, 접종 후 관리 등 단계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Q5>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A5 : 아직 완치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Q6> 검사를 받을 대상과 장소는 어디인가요?

A6 : 의사환자(확진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사의 소견으로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검체 채취가 가능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7>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A7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 및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 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접촉자가 되면,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현황

○ 운영기간 : '21. 7. 24.(토) ~

○ 검사대상 : 검사 희망자 누구나 검사 가능(익명 검사 가능)

* 밀접접촉자, 해외입국자, 유증상자 등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검사를 권고

지역	장 소	주 소	운영기간	운영시간
창원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의창구 창원대로 371	9.3.~	11:00~20:00
창원	마산역광장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	12.23~	9:00~17:00
김해	진영공설운동장	진영읍 김해대로 257	12.14.~	9:00~16:30
양산	물금보건지소	물금읍 황산로 384	12.15.~	9:00~16:00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연번	구 분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주 소	연락처	비 고
1		창원보건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2번길 9	055-225-4281	
2	창원시	마산보건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055-225-5941	
3		진해보건소	○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055-225-6101	
4	진주시	진주시보건소	○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055-749-5714	
5	통영시	통영시보건소	○	통영시 안개4길 108(무전동)	055-650-6055	
6	사천시	사천시보건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1	055-830-3620	
7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	김해시 분성로 227(외동)	055-330-4481	
8	밀양시	밀양시보건소	○	밀양시 삼문중앙로 41(삼문동)	055-359-7015	
9	거제시	거제시보건소	○	거제시 수양로 506(양정동)	055-639-6000	
10	양산시	양산시보건소	○	양산시 삼량로 169(중부동)	055-392-5220	
11	의령군	의령군보건소	○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6	055-570-4040	
12	함안군	함안군보건소	○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4길 10	055-580-3113	
13	창녕군	창녕군보건소	○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 1189-35	055-530-6217	
14	고성군	고성군보건소	○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03-3	055-670-4088	
15	남해군	남해군보건소	○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055-860-8740	
16	하동군	하동군보건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	055-882-4000	
-	산청군	(산청군보건의료원)			의료기관 분류	
17	함양군	함양군보건소	○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055-960-8040	
18	거창군	거창군보건소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055-940-8335	
19	합천군	합천군보건소	○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055-930-3683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연번	시군명	선별진료소명	검체 채취	주 소	연락처
1	창원시	창원경상 국립대학교병원	○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11	055-214-1000
2		한마음병원	○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055-225-0000
3		파티마병원	○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055-270-1020
4		삼성창원병원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055-233-6121
5		마산의료원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055-249-1116
6		SMG연세병원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055-240-7777
7		진해연세에스병원	○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32번길 13	055-240-7777
8		진해세광병원	○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55-1	055-540-3700
9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	진주시 강남로 79	055-750-8939
10		진주제일병원	○	진주시 진주대로 885	055-756-2900
11		진주고려병원	○	진주시 진주시 동진로 2	055-751-2525
12		진주반도병원	○	진주시 남강로 701	055-749-0200
13		진주복음병원	○	진주시 진양호로 370	055-749-7119
14		진주세란병원	○	진주시 진주대로 829	055-760-7575
15		진주한일병원	○	진주시 범골로 17	055-750-1333
16	통영시	통영적십자병원	○	통영시 중앙로 97	055-644-8901
17	사천시	삼천포서울병원	○	사천시 남일로 33(동금동)	055-830-9009
18		삼천포제일병원	○	사천시 중앙로 136	055-830-2965
19	김해시	김해중앙병원	○	김해시 분성로 94-8 (외동)	055-330-6007
20		조은금강병원	○	김해시 장유로 167-13 (부곡동)	055-330-0392
21		갑을장유병원	○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 (삼계동)	055-310-6114
22		강일병원	○	김해시 가락로 359	055-822-0100
23	밀양시	밀양윤병원	○	밀양시 삼문중앙로 32	055-354-2200
24	거제시	거봉백병원	○	거제시 계룡로5길 14	055-733-0188
25		거제대우병원	○	거제시 두모길16	055-680-8119
26		맑은샘병원	○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4477	055-736-1004
27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055-360-3366
28		베데스다병원	○	양산시 신기로 28	055-384-9901
29		웅상중앙병원	○	양산시 서창로 59	055-912-0119
30	의령군	의령병원	○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4길 10	055-573-4100
31	함안군	영동병원	○	함안군 칠원읍 용산2길 45-13	055-586-2000
32		아라한국병원	○	함안군 산인면 학산2길 17-50	055-582-8088
33	창녕군	한성병원	○	창녕군 창녕읍 교리1길 2	055-530-5119
34	남해군	남해병원	○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69	055-863-2201
35	산청군	산청군보건의료원	○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	055-970-7582
36	거창군	거창적십자병원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055-944-3251



대응지침 제9판 부록5 '일반국민 10대 수칙'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0가지

“코로나19와의 장기전, 흔들림 없이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 01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2m(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 02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하기
 2세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의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 03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
- 04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 05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06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0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하기
- 08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0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확인하기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10 필요하지 않는 여행 자제하기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름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2022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 안내

(자료제공: 사회혁신추진단 주민주도혁신사업담당 ☎211-4774)

□ 필요성

- (주민수요 증가) ('20년)접수 62건/진행 50건 → ('21년)접수 140건/진행 58건
- (지속가능한 공동체 지원) 주민공모사업 실행 경험 통해 주민의 필요사항에 대해 마을 사람들 간 협력을 통해 연대의 경험을 축적해나가는 과정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2. 1 ~ 11월
- (사업비) 300백만원(도비 150, 시군비 150)
- (사업량) 68개 공동체
- (시행주체) 시·군
- (사업대상) 도내 3인 이상 주민모임 등
- (사업내용) 모임 및 단체 공동체 활동 지원

분야	규모	최대지원액(모임당)	참가자격
씨앗기	31	2백만원	공동체 활동을 위한 3인 이상 주민모임 만들기 지원
활동기	33	6백만원	활동 중인 주민모임(단체)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지원
열매기	4	10백만원	주민모임(단체) 간의 공동사업 등 연대활동 지원

□ 추진계획

- 주민공모사업 공모 : '22. 1. 12. ~ 2. 11.
※ 공모신청단체 대상 사전상담 실시('22. 1. 24. ~ 접수이전까지)
- 최종 선정 및 회계교육 : '22. 3월
- 사업추진 및 모니터링 : '22. 4 ~ 11월

□ 기대효과

- 주민 간 관계망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



2022 경상남도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

2022. 1. 12.(수) ~ 2. 11.(금)

우리마을의 변화를 꿈꾸는 주민모임 누구나!

공모대상 경남도내 3인 이상 주민모임

접수처 각 시군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 메일접수

지원자격

경남도내 3인 이상 주민모임(단체) 누구나

공모분야

주제는 자유!

분야	규모	최대지원액	지원자격
씨앗기	31	200만원	3인 이상 주민모임
활동기	33	600만원	1년 이상 활동중인 주민모임
열매기	4	1,000만원	1년 이상 활동한 주민모임 2개 이상

사전상담 (경상남도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 ✓ **사전상담이란?**
공모사업 안내 및 공동체성 있는 사업 기획 지원
- ✓ **누가 신청하나요?**
공모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주민모임 모두!
- ✓ **누가 상담해주나요?**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공동체협력지원가

사전상담신청방법

2022. 01. 19.(수)까지 시군 담당부서로 유선 또는 메일 신청

서류접수기간

2022. 02. 09 (수) ~ 02. 11 (금) 18:00까지
각 시군 담당부서 방문접수 또는 메일, 우편접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창원시	225-2724	함안군	580-2505
진주시	749-8184	창녕군	530-1084
통영시	650-5832	고성군	670-2634
사천시	831-3236	남해군	860-8638
김해시	330-3454	하동군	880-2814
밀양시	359-5059	산청군	970-6143
거제시	639-3264	함양군	960-4112
양산시	392-2072	거창군	940-3074
의령군	570-2773	합천군	930-3072

※ 사전상담은 필수입니다 ※ 문의: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211-4774)

2022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이용 안내

(자료제공: 일자리경제국 노동정책과 ☎ 211-3467)

2022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주요 내용 및 신청절차 등 안내입니다

□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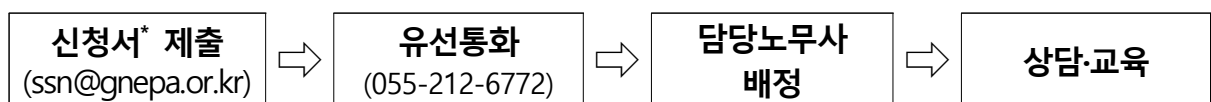
- 도내 취약노동자, 중소기업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권역별 노무사 위촉을 통해 무료 노동 상담, 노무 컨설팅, 노동 관련 법 교육을 제공

□ 주요내용

- (내용/대상) 노무사 위촉을 통한 노동 상담, 노무 컨설팅, 노동 관련 법 교육 제공
 -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 상담 :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둔 개인 및 기관
 - ② 중소기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 노무컨설팅 : 종사자수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
 -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컨설팅 : 종사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 등
 - ③ 노동 관련 법 교육 : 도내 노동자 개인·단체(노동조합), 소상공인, 영세사업장 등
- (지원시기) 2022. 1월 ~ 12월(예산소진시 까지)
- (구성현황)

권역(위촉인원)	활동지역	시군 분포도
창원권(10명) 통영권(3명)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진주권(3명)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양산권(3명)	양산시, 밀양시	
김해권(4명)	김해시	

□ 신청절차



*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www.gnepa.or.kr) > 지원사업안내 > 신청서류 및 서식자료실



노동자·사업주
필요하면 누구나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란?
경상남도가 도민노무사를 위촉하여 노동자 노동상담,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 노동법교육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이렇게 이용하세요!

신청서 제출

ssn@gnepa.or.kr /
kms@gnepa.or.kr



유선통화

055-212-6772
055-230-2931



상담/교육

노무사 연례(3월이내)
일정협의 후 실시



담당노무사
배정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자 권익보호 및 사적예방
노동자를 위해 찾아가드립니다

노동자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임금체불, 차별, 산재 상담,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임산·출산·육아기
노동자 상담



진정서 작성



부당해고 구제 등 대리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를 둔 노동자
(권리구제의 경우 세전 월 소득 250만원 미만),
도·시·군 및 유관기관(출자·출연기관 포함)



사업장 노무관리지원 및 컨설팅
사업장 관리가 까다롭고 어렵다면,
사업주를 위해 찾아가드립니다

사업주

노무 컨설팅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노무컨설팅



주52시간제 컨설팅
(300인 미만)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를 둔 50인 미만 사업장,
도·시·군 및 유관기관(출자·출연기관포함)



노동자 /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노동자의 권익침해 및 법 위반 행위
노동법 교육을 위해 찾아가드립니다

노동자/사업주

노동법 교육



필수 노동법 교육



최근 위반 사례 교육



질의응답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를 둔 노동자 및 기업, 단체,
도·시·군 및 유관기관(출자·출연기관포함)

2022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안내

(자료제공: 산업혁신국 신산업연구과 ☎ 211-3172)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과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안내입니다

□ 현황('21.12월 기준)

- 수소충전소 구축 : 경남도내 11개소 운영(6개소 구축중)
*창원 6(팔용, 덕동, 성주, 중앙, 죽곡, 사림), 진주 판문, 김해 안동, 거제 장평, 양산 물금, 함안휴게소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 경남도내 1,552대 보급(승용 1,525, 버스 29)

□ 수소충전소 구축

- 지원대상 : 주유소LPG충전소 등 잔여 부지제공이 가능한 개인 또는 법인
- 지원예산 : 일반용 30억원, 버스 등 특수용 60억원
- 의무운영 : 5년
- 지원절차 :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

□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 지원대상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도민
- 지원예산
 - 승용차 1대당 33.1백만원(실구매가 3,745만원 내외)
 - 저상버스 1대당 5억원(실구매가 1.3억원 내외) * 운수사업자용
 - 광역버스 1대당 5억원(실구매가 1.6억원 내외) * 운수사업자용
 - 화물차(10ton) 1대당 4.5억원(실구매가 1.5억원 내외)
- 의무운영 : 2년
- 지원절차 :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안내

수소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 지금 그 주역이 되세요!



수소는 도시가스 보다
안전합니다!

1
수소

* 출처: 연료별 상대적 위험도
(15개 항목평가, 한국산업안전공단 MSDS, 미국화학공학 회 DIPPR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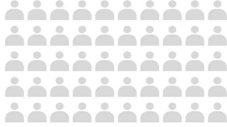
1.03 도시가스	1.22 LPG	1.44 가솔린
--------------	-------------	-------------

평가요소 상대적위험도(수소=1) 안정성: 수소 > 도시가스 > LPG > 가솔린

수소충전소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1 주요 부품
검사인증 체계
- 2 안전관리자 상주,
주변 안전거리 철저히
- 3 3중 안전장치
설치

수소차는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1시간 운행 = 성인남자 50명분 공기정화"

신입 = 내연버스
대리 = 전기버스
부장 = 수소버스

국내 버스업계 Rule

일반	초봉이 입사 5년차	전기	테라이 입사 10년차	수소	말년이 입사 20년차
소음	-----	-----	-----	-----	-----
매연	-----	-----	-----	-----	-----
가속력	★★★★★	★★★★	★★★	★★	★
유연	Slow	Slow	Slow	Fast	Fast

저소음 + 고효율 연비 + 빠른 충전 = 수소차 보조금은?



3,310 만원



5억원

창원시 055-225-3307 진주시 055-749-8639 통영시 055-650-5473 김해시 055-330-2454 사천시 055-831-2769
밀양시 055-359-5332 거제시 055-639-3963 양산시 055-392-2604 의령군 055-570-2604 함안군 055-580-2534

본사업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별 수소차 보급 가능대수는 문의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및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안내

(자료제공: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 ☎ 211-4323)

건축허가 또는 그와 관련된 민원 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및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안내입니다.

□ 추진배경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축설계 후 행정청의 불허가 사례 지속적 발생(행정심판 증가)
- 건축허가 가능여부등을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확인으로 토지매입 및 설계비에 소요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예방과 민원 처리기간 단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미연에 방지

□ 개 요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 건축허가 부서에 신청하면 건축허가 가능여부, 규모, 건축허가 조건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제도
-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건축허가, 공장설립,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으로 청구된 민원을 심사하는 제도
- (신청방법)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 세움터(<https://cloud.eais.go.kr>)
 -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 시·군 민원부서

□ 홍보내용

- 도민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및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요청



사전심사청구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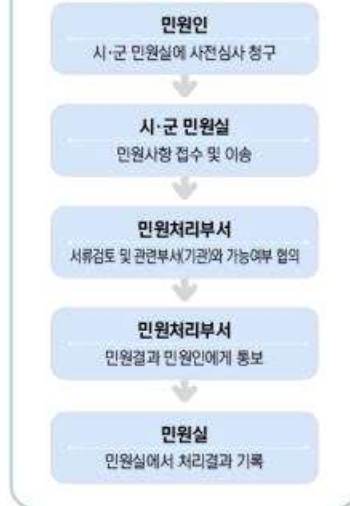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결과(가·부)를 알려줌으로써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민원처리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닙니다.

- 운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
- 대상민원** ▶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 인·허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 운영기간** ▶ 연중
- 접수처** ▶ 시·군 민원실
- 처리기간** ▶ 총 30일(대상민원별 상이)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처리절차



경상남도 | 건축주책과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Tel. 055-211-4324 Fax. 055-211-4319

같이 만드는 확신! 새로운 경남

도민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건축허가 사전결정 제도 안내



경상남도
(건축주책과)



건축허가 사전결정 제도란?

- 이 민원은 건축허가 신청전 해당 대지에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설계를 약식으로 작성한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건축물의 규모, 건축허가 조건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제도로, 건축물을 새로이 짓고자 하는 도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운영근거** ▶ 건축법 제10조
- 신청방법** ▶ 온라인(세움터), 방문, 우편
- 접수처** ▶ 시·군 건축허가부서
- 처리기간** ▶ 총 45일
- 수수료** ▶ 없음



누가, 무엇을 신청하나요?

건축물을 새로이 짓고자하는 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결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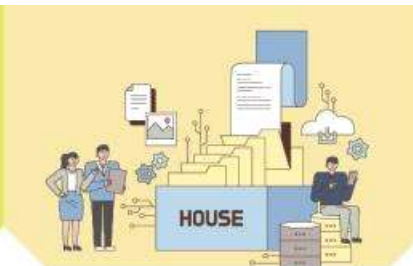
- 0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 02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 0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민원인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온라인 신청 방법은 ?

▶ 세움터 (<https://cloud.eais.go.kr>)

신청서 내려 받기는?

▶ 경상남도홈페이지 (<http://www.gyeongnam.go.kr>)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진행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전결정제도 효력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 안내

(자료제공: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 ☎ 211-4474)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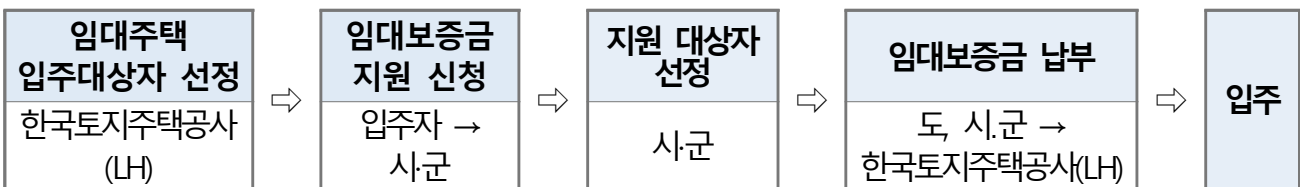
-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 가구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가구
 - 같은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 무주택가구
- 지원기간 : 최초 2년, 추가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
- 지원조건 : 본인부담 계약금 외 보증금(최대20백만원) 전액 무이자 지원, 지원주택 퇴거 시 원금 회수

□ 사업 추진 절차



□ 사업 지원신청 안내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창원	225-4224	밀양	359-5388	창녕	530-1383	함양	960-4822
진주	'22년 사업 미추진	거제	'22년 사업 미추진	고성	670-2275	거창	940-3606
통영	650-5746	양산	392-2474	남해	860-3245	합천	장기임대주택(X)
사천	831-3218	의령	570-3533	하동	'22년 사업 미추진	경남도	211-4474
김해	330-3919	함안	580-2715	산청	'22년 사업 미추진		

- 각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자료제공: 도시교통국 토지정보과 ☎ 055-211-4445)

임대인- 임차인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임차인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 신고의무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 임차인 공동신고
 -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주택 : 2021. 6. 1. 이후 계약 체결한 주택
 - ① 단독 · 다가구 ②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 ④ 기숙사 · 고시원 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
 - * 우리 도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내용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 종류 등 목적물 현황, 임대차 계약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여부
-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신고효과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위반 시 제재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아직도 확정일자 받으러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세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전월세신고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신규, 갱신, 해제)

| 신고 시행일 |

2021년 6월 1일(화)

| 신고 의무인 |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신고 대상 |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면·동·출장소) 방문신고

| 제재 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자료제공: 도시교통국 토지정보과 ☎ 211-4433)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사항과 일치하지 않거나 미등기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하기 위함.

사업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읍·면지역 : 토지 및 건축물
 - 시 지역 : 농지 및 임야(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인 창원, 김해는 읍면지역만 해당)
-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

확인서발급 신청서류(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 확인서발급 신청서
- 보증서 :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5명(자격보증인 1명 포함)에게 보증서에 날인을 받고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를 대장에 등록 후 제출
-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사실증명서(등기소 발급)
-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공유 부동산에 한함)
- 기타 소유권 분쟁 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 등

벌 칙

-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는 등의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의사항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배제 조항이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분할허가,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 내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은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에게 보증에 대한 보수(법무부령)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업무처리 흐름도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구	부서	전화번호	시군구	부서	전화번호
창원시	건축경관과	055-225-4393	의령군	민원봉사과	055-570-2442
창원시 의창구	민원지적과	055-212-4163	함안군	종합민원과	055-580-2274
창원시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	055-220-4162	창녕군	민원봉사과	055-530-1343
창원시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055-230-4164	고성군	민원봉사과	055-670-2773
진주시	토지정보과	055-749-8432	남해군	민원봉사과	055-860-3023
통영시	민원지적과	055-650-4833	하동군	민원과	055-880-2093
사천시	토지관리과	055-831-2351	산청군	민원과	055-970-6322
김해시	토지정보과	055-330-3763	함양군	민원봉사과	055-960-4482
밀양시	민원지적과	055-359-5216	거창군	민원소통과	055-940-3832
거제시	토지정보과	055-639-3623	합천군	민원봉사과	055-930-3202
양산시	토지정보과	055-392-2402	하동구역청	민원행정팀	055-880-6464

경상남도 토지정보과 ☎ 211-4433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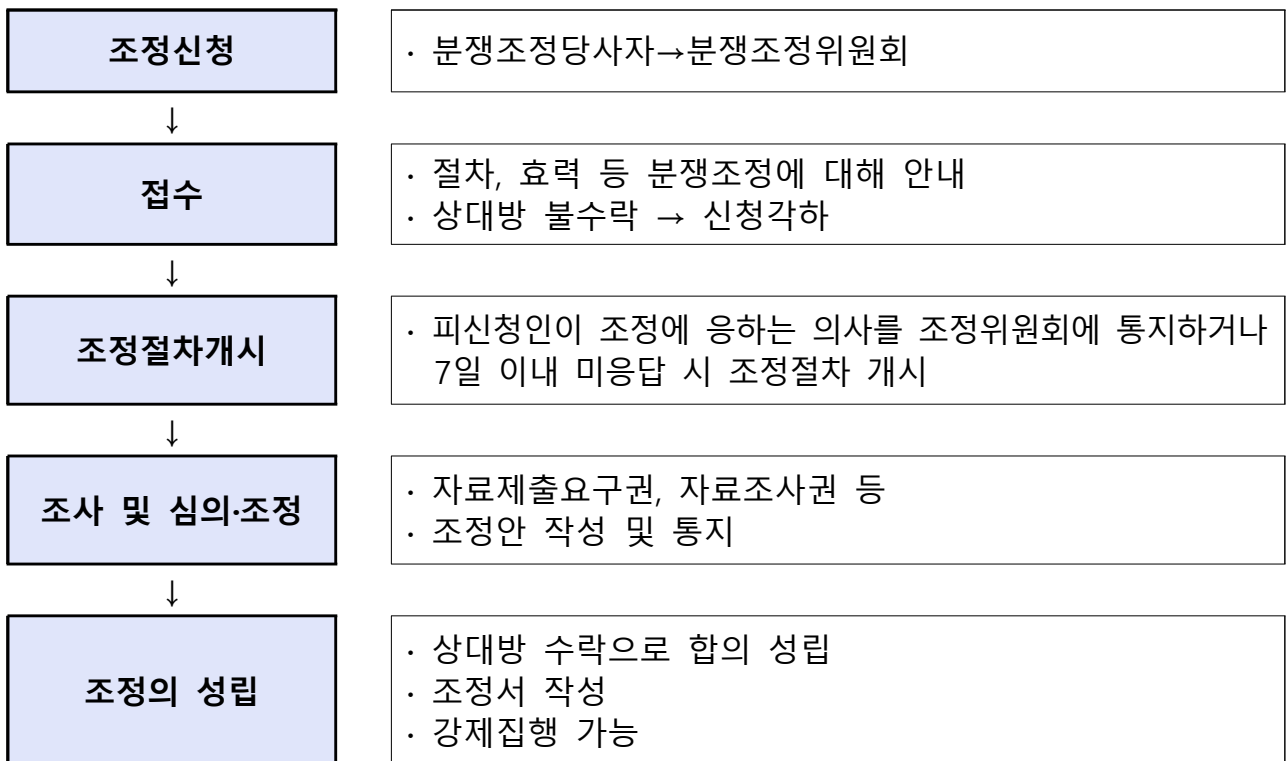
(자료제공: 도시교통국 토지정보과 ☎ 055-211-4445)

도내 주택(상가)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경상남도 관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안내해 드립니다.

□ 경상남도 관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운영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6층
- 연락처 / 홈페이지 : 055-713-8932(상담콜센터 1670-0800) / rent-adr.lh.or.kr
- 기능 : 임대차계약상 분쟁의 상담, 분쟁 합의 도모 및 조정
- 차임·보증금 증감 및 반환 분쟁, 유지·수선의무 분쟁, (상가)권리금 분쟁 등

□ 조정절차



* 소요 기간 : 조정 신청부터 조정 성립까지 60일 이내(+30일 가능)

** 조정의 효력 :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조정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 인정(미이행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가능)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안내

(자료제공: 기후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211-6644)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 체계 전 단계 개선을 위하여 '20.12.25부터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책 홍보입니다.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란?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투명 페트병을 타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제도

□ 주요내용

- 관련근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
- 시행시기 : '20.12.25.부터 시행
- 대 상 : ('20.12.25) 공동주택* 先시행 → ('21.12.25)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전국적 확대
* (공동주택) ①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②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 아파트

□ 관련 추진사항

- 환경부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균 2매의 마대 배포 중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창원,김해) 실시('20년)

구분	사업비(백만원)	사업량(세대수)	전단지 배부	전용그물망	전용봉투
계	340	312,345	29만부	30,056	2,319,410
창원	120	95,741	10만부	8,556	994,410
김해	220	216,604	19만부	21,500	1,325,000

□ 홍보내용

- 경남 플라스틱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생활 속에서 도민들이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요청
- 특히, 페트병 분리배출 시 압착하여 뚜껑 닫아 배출하도록 안내
⇒ 뚜껑의 경우, 재활용 과정의 세척 공정에서 비중차이에 따라 몸체와 분리가 가능하여 배출의 편의성 및 부피 저감 등을 위해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배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왜 분리해서 버려야 할까요?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2.2만톤의 페페트 수입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연 2.9만 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 확보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플라스틱 배출함에 일괄배출



투명 페트병 전용배출함에 배출하기

투명 페트병!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내용물은 싸~악 비우기!



라벨은 착! 제거하기



찌그러트리고 파~악 뚜껑 달가

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왜 1년 뒤 시행인지?

- ☞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 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
- ☞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혼합방지 대책 등을 추가로 마련 후 '21.12.25부터 시행할 예정임

② 뚜껑을 닫고 배출하라고 하는데, 뚜껑은 다른 재질이라 섞이면 재활용이 어려운 게 아닌지?

- ☞ 최근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아져 부피를 줄이기 쉽도록 압착 후 뚜껑을 닫도록 안내하고 있음
- ☞ 뚜껑은 PE, PP 등 물에 뜨는 재질이며 몸체인 PET는 물에 가라앉는 재질임, 이에 따라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 과정에서 분리할 수 있어 같이 배출해도 재활용할 수 있음
 - ※ 다만, 철로 된 뚜껑은 따로 떼서 배출
- ☞ 다만, 뚜껑을 닫지 않고도 충분히 압착 및 이물질 제거한 상태라면 뚜껑을 닫지 않고 배출하는 것도 가능함

③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대상인 음료·생수 외에 투명한 간장통,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등도 같이 배출이 가능한지?

- ☞ 간장통은 원칙적으로 대상은 아니나 내용물을 깨끗이 씻으면 같이 배출 가능함
- ☞ 그 외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함
 - ※ (일회용컵) PET 외에 PS 등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다른 재질로 생산된 경우가 있고, 직접인쇄가 많아 재활용 품질이 떨어짐
 - (트레이) 스티커, 직접인쇄가 많아 재활용 품질이 떨어지고, 성형을 위해 일부 순수 PET 이외의 재질(PET-G)을 혼합하여 제작한 용기가 있음

④ 분리배출보다 먼저 라벨을 떼기 쉽게 하고, 유색페트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 환경부는 '19.12.25일부터 음료·생수 페트병에 유색 몸체 및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사용을 금지하고,
* 열알칼리성 수용액(NaOH 2%)에서 분리가 되지 않는 접착제
- ☞ 라벨도 절취선, 제거용 손잡이 등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넣도록 하고 있음
 - 절취선을 넣지 않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라벨 사용 시 ‘재질·구조 등급평가’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부여하여 이를 제품 표면에 표시하고, 생산자의 비용부담*을 강화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생산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을 20% 할증
- ☞ 올해 12월부터는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생수)도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20.12.4.시행), ‘라벨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과 ‘병마개에 라벨이 부착된 먹는샘물(날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

⑤ 어릴 때부터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도 하는 등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게 아닌지?

- ☞ 현재 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페트병 생산·유통업계,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음
 - * 환경부 유튜브에 “매미킴 김동현이 알려주는 페트병 분리배출” 게시
- ☞ 아울러, 교육부와 협의하여 분리배출 전 과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에 배포할 예정

⑥ 옷 한벌을 만드는데 필요한 페페트병의 양은 얼마인가?

- ☞ 옷의 종류 및 디자인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 티셔츠 한벌에 500ml 12병 또는 2L 5병이 들어가며, 긴소매 기능성 자켓은 500ml 약 32병 소요

⑦ 관내 아파트에서는 배포된 마대보다 작은 마대를 쓰거나, 비닐로 수거하고 있어 배포된 마대 사용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이번에 배포된 마대는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크기를 배포한 것으로 전국단위로 배포가 이뤄지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배포된 마대가 아닌 기존 수거 방식을 활용하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동참해줄 것을 독려

⑧ 마대를 받지 못한 곳도 있는데 마대를 받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 자원순환 도우미가 배치된 1.5만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배송

☞ 도우미 미배치 등으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인데도 못 받은 곳 중 현재 수요조사를 마친 70개 지역 약 4천장은 12월~1월초 중 요청받은 배송지로 발송(아파트 직접 배송, 일부 지자체는 시·군·구청으로 배송)할 예정

⑨ 배포된 마대인 단지당 2매는 대단지 등에서는 사용하기에 양이 너무 부족한데 추가 배포 계획이 있는지?

☞ 현재 추가로 3.6만매를 제작하고 있으며, 1월 중 집중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1월부터 순차적으로 배송

☞ 추가 배포는 지자체별 공동주택 세대수, 배출하는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으로 직접 발송할 예정(추후 1월 중 공문으로 안내)

☞ 추가로 기존에 배출장소마다 설치된 플라스틱 수거함 2~3개 중 1개를 페트병 전용으로 표시해서 사용하면 추가 마대 없이도 가능함을 안내하고,

☞ 추가로 필요하다면 아파트단지 등에서 마대를 추가로 구비하여 협조해 달라고 요청

* 현재 배포하는 마대는 다회용이긴 하나, 제도 초기 정착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후 별도 배출을 위한 마대는 배출자가 구비 필요

⑩ 배포된 마대를 무시하고 수거업체에서 혼합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혼합수거 및 혼합배출에 대한 민원이 다량 있을 것으로 예상
- ☞ 관할 내 공동주택에는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배출자 신고제도에 따라 페트병이 별도 신고항목에도 들어가 있는 점을 안내하면서 별도 배출이 불가피함을 안내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별지 제4호의9서식
- ☞ 수거업체에는 혼합수거를 최대한 자제하고 협조해줄 것을 요청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도록 규정, 이를 위반 시 법 제66조 제1호, 시행규칙 제83조 및 별표 21의 2. 다. 6) 라)목에 따라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으나, 처벌 시 수거 공백, 법적디툼 지속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처벌규정의 언급보단 협조를 우선적으로 요청
- ☞ 지속적인 비협조 시 추후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 수거체계 관리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⑪ 배포되는 마대 크기와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12월 아파트 배포 마대	추가 배포예정 마대
	
<p>사이즈(cm) : 90(가로)×90(세로)×120(높이)</p>	<p>사이즈(cm) : 100(가로)×100(세로)×145(높이)</p>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주민 협조

(자료제공: 기후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211-6704)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란?

-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기간 : 2021. 12. 1. ~ 2022. 3. 31.
- 추진배경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동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으로 청정대기를 유지하고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추진경과

-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19. 12. ~ '20. 3.
-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20. 12. ~ '21. 3.
- 2차 계절관리제 시행결과, 전년 동기 대비 PM2.5 2% 감소(18.8→18.5 $\mu\text{g}/\text{m}^3$)

□ 주요 추진사항

- 수송 : 비상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수도권은 상시 제한)
- 발전 :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 산업 :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
- 생활 :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등

□ 주민 협조사항

주요 내용	협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 지역 - 위반 시 과태료 부과(10만원/일)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22.12.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저감장치 미개발장치불가 차량은 '23.12.31.까지 단속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차량 5등급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33-7435(콜센터) 및 055-114 ○ 저공해 조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환경과에 문의 ○ 수도권 계절관리제기간 상시 운행제한 ○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계절관리제기간 시범 운행제한(과태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 소각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폐기물(폐비닐 등) 및 부산물(벼, 보릿대 등) 불법소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 실천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건강지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 배출 감소, 불법 배출 및 소각 금지 ○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 외출 후 손씻기 등 청결유지 등



걸고, 끄고, 외쳐요. 푸른 하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1.12~2022.03

걸고



끄고



외쳐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QR찍고!
미세먼지
종합포털
바로가기



산업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감시



발전

- 석탄화력 가동 축소
- 전력수요 관리 강화



수송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항만 미세먼지 감축



생활

- 농촌 불법소각 방지
- 도로 미세먼지 제거
- 미세먼지 정보제공 확대

미세먼지 비상 시,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안내

(자료제공: 기후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211-670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인 5등급 자동차의 도심지 운행제한 필요성 및 친환경전환 유도를 통한 노후차량(저공해 미조치) 제로화 추진
- ※ 전국 17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전격 시행

□ 개요

- (시행시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年 2~4일 추정
 - 익일 06 ~ 21시 시행(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 $50\mu\text{g}/\text{m}^3$ 를 초과, 익일 $50\mu\text{g}/\text{m}^3$ 초과 예보 시 발령
-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전국) * 도내 123천대('21.12월 기준)
- (제한지역) 창원, 진주, 김해, 양산(4개 시)
 - 통영, 사천, 밀양, 거제시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22년 하반기 예상)
- (제한방법) 75개 지점 94대 무인단속시스템(cctv)
-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영업용 자동차 등
-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22. 12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 '23. 12월까지 단속 제외
- (유예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시군 환경과 신청
- (위 반 시) 10만원/일(1일 1회 최초 적발 지자체 부과)

□ 홍보내용

- 1833-7435(콜센터) 및 055-114에서 5등급 여부 확인 가능하며, 5등급 차주께서는 저공해조치(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협조
- 저공해조치 신청 시 2022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되므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시군 환경과로 신청
- 타 지역 운행 시 발령시기 및 단속기준이 상이하여 해당 지역의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에서 확인

더큰경남, 더큰미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운행제한 안내

제한일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06시~21시)
※ 토요일, 공휴일 제외(평일에만 단속)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제외대상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저감장치 부착차, 영업용 자동차 등

제한지역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 통령·사전·밀양·거제시는 단속카메라 구축 완료 후 제한 예정 (22년 하반기 예상)

단속방법

- 주요 도로 무인 단속카메라(CCTV)

위반 시 조치

- 과태료(1일 10만원) 부과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기타 안내

※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휴대폰 긴급 재난문자**로 안내됩니다.

※ 재난문자가 수신이 안 된다면?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SMS 안내 서비스 신청
- 전국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일 안내 문자 제공

유예 안내

유예대상 및 기간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22. 12.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 '23. 12. 31.까지' 단속 제외

신청방법

- 1 차량 등록지 시·군 환경과에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 운행제한 > 저공해조치 신청 > 동의 > 본인인증 > 신청
 - 본인인증방법(본인차량만 가능) : 인증서, 휴대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4가지 운행제한 제도 안내

구분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녹색교통지역	수도권노후경유차
시행지역	전국	수도권 (6대 특별시는 시범단속)	서울 한양도성 내	수도권
시행시기	비상조치 발령 시	12~3월	연중	연중
대상	5등급 차량	5등급 차량	5등급 차량	특정경유차
과태료	1일 10만원	1일 10만원	1일 10만원	월 20만원



▶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055-114 또는 1833-7435(콜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자료제공: 농정국 동물방역과 ☎ 211-6563)

도내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장애인보조조건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에 많은 신청바랍니다.

□ 추진배경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증가
- 경제적 사정으로 반려동물의 치료 적기를 놓치는 사례 빈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단, 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업량 : 1,666가구
- 사업비 : 400백만원(도비 100_(25%), 시군비 200_(50%), 자부담 100_(25%))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장애인 보조조건 소유자
- 사업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 이내 지원
-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

□ 지원방법 및 절차

- 지원조건 : 주민등록상 경남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반려동물소유자
내장형 RFID(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시술 반려동물에 한함
※ 이미 내장형 RFID 장착 반려동물은 전액 진료비로 사용 가능
- 지원절차
 - 선정 대상자는 도내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 전액 수납
 - 동물병원에서는 진료 후, 진료 영수증 발급
 - 진료 영수증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관할 시군(읍면동)에 보조금 신청
 - 시군(읍면동)은 서류검토 후, 자담(25%) 제외한 진료비 계좌 입금



- | 지원조건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지를 갖고 있는 반려동물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사업내용 가구당 연 24만원(등록비 포함)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25%) 있음
-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에 문의 바람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

(자료제공: 기획조정실 정보담당관 ☎ 211-2616)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상이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무상 임대하는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

- 임대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 임대비용 : 무상임대 (기기보증금 3%)
- 임대기간 : 1년(12개월)
- 신청기간 : '22. 1. 3. ~ 2. 28.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방문 접수
- 신청문의 :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보조기기센터(055-237-8242)
- 임대기기

기기종류	기기명	임대수량	비 고
독서확대기	디지털 XL FHD 12	5	신청 선착순 임대
	크러보 10 HD	5	"
	엑스프로 8 HD	4	
	Compact 10 HD	5	
	아이러뷰 7	4	"
	아이러뷰 13	1	"
	센스뷰 비전 프로	1	"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 7	12	"
언어훈련S/W	스피치 미러탭	4	"
의사소통보조기기	메시지 스톤	4	"
특수마우스	친플러스 마우스	2	"
	안경마우스2-호흡스위치	2	"
	안구마우스(TM5mini)	1	"

경상남도 GYEONGNAM ,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 함께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대상자 모집



QR코드 스캔 후
경남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참조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시각, 청각, 언어, 지체, 뇌병변, 발달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모집기간 및 인원

- 2022년 1월 3일 - 2월28일
- 최대 50명 (기기별 임대 인원 상이함)

문의처
경상남도보조기기센터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97번길 85
T. 055-237-8242

접수 방법
전화 또는 방문 접수(문의처 참조)

지원 내용
총 13종 보조기기
12개월 장기임대

- 독서확대기 7종 25대
- 점자정보단말기 1종 12대
- 언어훈련 S/W 1종 1대
- 의사소통보조기기 1종 1대
- 특수마우스 3종 5대

※ 기기별 임대 보증금 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안내(경남스마트쉼센터)

(자료제공: 기획조정실 정보담당관 ☎ 211-2617)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해 상담과 조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무료 상담서비스 안내입니다.

☐ 경남스마트쉼센터 이용안내

- 대 상 : 유아동, 청소년, 성인(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 이용방법
 - 전화상담 : 1599-0075(전국), 055)211-7333~5(경남) (평일 9~18시)
 - 내방상담 (전화, 온라인 예약 필요)
 - 개인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실시(평일 9~18시)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용호동) 경남연구원 1층 102호
 - 가정방문상담
 - 전화·온라인 신청 후 상담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상담

※ 모든 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

☐ 인터넷 및 스마트폰 바른사용 실천 가이드

- 편한자세보다 불편해도 ‘바른자세’ 가 좋아요
- 스마트폰을 ‘약속된 장소’ 에 보관하는 습관을 가져요.
-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얼굴보며(eye-contact)’ 대화해 보세요.
- (보행·이동 시) ‘안전하게’ 가방에 꼭 넣어요.
- (공공장소 등) 통화, 음악감상, 동영상 시청 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기본매너’ 를 실천해요.
- 자신(자녀)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 하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보세요. (QR코드를 통한 자가진단)



태풍·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자료제공: 재난안전건설본부 자연재난과 ☎ 211-2836)

풍수해와 지진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셨을 때 경제적 안정과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하여 재난을 대비합니다.

☐ 풍수해보험이란?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재고자산) 모두 가입할 수 있고, 소유자 외 세입자도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보조해드립니다.
- ☞ (정부지원율) 주택·온실 70%, 소상공인 70%, 취약지역* 87% 지원
- *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

☐ 소상공인 우대혜택은?

- 보험가입 증권(사본)으로 아래의 우대혜택(중복가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우대혜택	1.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평균 1.2% > 0.8% 2.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 일반 85% > 90% 3. 5천만원이하 보증 시 신용보증심사 우대 약식평가, 한도상향 등 우대적용가능	대출금리 0.1% 우대적용 ☞ 대상: 정책자금 6종	
		일반소상공인자금	사업전환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초기자금
		고용안정지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문의처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 1588-7365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가입문의

- 시·군청 재난부서, 읍·면·동 풍수해보험담당자, 5개 판매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02)2100-5103	02)2100-5104	02)2100-5105	02)2100-5106	02)2100-5107

붙임**풍수해보험 주요 보상사례** 주택

가입	목적물	주택	지역	남해군
	총보험료	41,900원	가입자부담	19,900원
			보험료지원	22,000원
피해	피해일자	2019. 9. 22.	피해유형	태풍
	손해구분	전반파	피해면적	33㎡
지급	지급보험금	33,750,000원	미가입 시 재난지원금	반파 6,500,000원 (보험금이 5.2배 큼)

 온실

가입	목적물	온실(비닐하우스)	지역	밀양시
	총보험료	2,895,500원	가입자부담	243,200원
			보험료지원	2,652,300원
피해	피해일자	2016. 10. 5.	피해유형	태풍
	손해구분	소파	피해면적	1,650㎡
지급	지급보험금	15,859,800원	미가입 시 재난지원금	소파는 재난지원금 미지원

 소상공인

가입	목적물	소상공인 재고자산	지역	포항시
	총보험료	81,300원	가입자부담	40,200원
			보험료지원	41,100원
피해	피해일자	2019. 10. 3.	피해유형	태풍
	손해구분	-	피해면적	-
지급	지급보험금	30,000,000원	미가입 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미지원

2022년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영아수당 신청하세요

(자료제공: 여성아동복지국 가족지원과 ☎ 211-5275)

□ 사업개요

- **(도입목적)** 영아수당을 도입하여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 및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 **(도입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 **(사업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만 0~1세)

기 존			변 경			
가정양육수당	만 0세	월 20만원	⇒	영아수당	만 0~1세	월 30만원
	만 1세	월 15만원		가정양육수당	만 2~7세	월 10만원
	만 2~7세	월 10만원				

- **(지원내용)** 가정양육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단계적 확대 예정 : ('22) 30만원 → ('23) 35만원 → ('24) 40만원 → ('25) 50만원
- **(지급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입금)

□ 영아수당 신청 방법 안내 ※ 문의사항 : 전국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번없이129

신청자격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밖의 사람,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신청시기	2022년 출생후 60일 이내 ※ 이후 신청시 소급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 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구비서류	필수	①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년증) ③ (대리인 신청시)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추가 (필요시)	① 통장사본 ② 보호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가족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③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④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자)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 소지자)

영아수당

2022년 1월부터 신청 및 지급



지원대상

만0~1세 아동(22년생부터)

지원내용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
중 택1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양육방식별 신청서비스명

가정양육	어린이집이용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이용
영아수당(현금)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

영아수당(현금)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30만원	이용권(바우처) 지원	이용권(바우처)지원

* 어린이집·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 발급필요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등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신규발급 불필요

지원시기

0~23개월/양육방식 변경시 반드시 해당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ex) 가정양육으로 현금지원을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서비스 신청 필요

신청방법

방 문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문의사항

전국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안내

(자료제공: 여성가족아동국 가족지원과 ☎ 211-5263)

개별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시행 안내입니다.

□ 추진배경

- 정부에서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임산부가 서비스를 알지 못해 받지 못하거나 일일이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
-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 시행시기 : 2021. 4. 19. ~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 누구나
-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방 문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 서비스 문의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임신지원 서비스
 - 전국공통 서비스 : 엽산제 지원, 철분제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맘편한 KTX, 위기 임신 전문 상담,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 지자체 서비스 : 임산부 주차증 등 지자체별 제공 내역이 다름
- 택배서비스 지원 : 엽산·철분제 등 물품서비스 제공(선결제시 요금 할인)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2021년 4월 19일부터
전국 실시합니다!



Q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란?

A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통합신청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

- 임신제 지원
- 월분제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연금가입자
- 에너지바우처 의료·보건계급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맘편한 KTX 영남·북상 노선(개요는)
-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개별서비스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

임신제, 월분제,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자체 서비스 지역별 신청처

지역별 신청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의료수급자 제외 - 월분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대체되며, 지역교육은 임신부 본인 부담입니다.

Q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일 기준 임신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방문 신청, 신분증

* 의료수급자 제외, 산모 신청자 건강관리지원 신청서 작성(대상지역) 또는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

2021년 4월 19일부터
전국 실시합니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란?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임신부



구비서류

온라인 공동인증서

방문 신분증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문의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임신지원 서비스 통합안내 ✦

전국공통 서비스

-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 맘편한 KTX **일반** · **특실 업그레이드**
- 위기임신 전문 상담

일반 서비스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에너지 바우처 **의료 생계급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 출산 전후 유산산 후기급여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지자체 서비스 *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 내역이 다름



기형아 초음파·막달 검사, 건강검진,
가사도우미, 부부출산준비교실 등



환물

신생아용품, 비타민 등 영양제,
튼살크림, 임신부 주치증 등



현금·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주치료 감면,
출산준비금 지원, 검진비 지원 등

✦ 통합신청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

- 엽산제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맘편한 KTX **일반** · **특실 업그레이드**
- 철분제 지원
- 에너지 바우처 **의료 생계급여**
-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택배서비스 가능한 임신지원 서비스 ✦

엽산제, 철분제,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자체 서비스(임산부 주치증, 임신축하용품 등)

지자체 서비스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택배 신청시 엽산·철분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공되며,
택배요금은 임신부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안내

(자료제공: 여성가족아동국 가족지원과 ☎ 211-5263)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추진배경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시행시기 : 2021. 5. 2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부터 적용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포(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25일
-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신청문의 : 상세 소득판정 기준 및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국민연금 119
힘겨울 땐 129

'21. 5. 22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원대상

통합형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 **150%이하로 확대**

* 2021년 4인기준 소득 7,314,000원

시행시기

'21. 5. 2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부터 적용

서비스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문의

상세 소득판정 기준 및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



보건복지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보건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방법 등 안내

(자료제공: 여성가족아동국 아동청소년과 ☎ 211-4274)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개념, 처벌, 유형, 신고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아동학대 개념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

□ 아동학대 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치사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중상해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3년이상 징역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유형/징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신체학대	발생회복 있어 시간차 있는 상처 사용된 도구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손바닥, 발바닥, 등, 엉덩이에 담뱃불자국, 양말모양 등 상처, 화상자국, 묶은 줄 화상 등	어른과 접촉회피,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적인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부모가 손상을 알려줌
정서학대	성장장애, 신체발달 저하, 언어장애	특정물건에 대해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 뜯음, 반사회적 및 파괴적 행동장애 수면장애, 극단행동, 지나친 행동 등
성 학대	걸거나 앉는데 어려움, 찢어지고 피로 얼룩진 속옷,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임신 등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 기괴하고 미묘한 성적 행동과 지식 친한 친구가 없음, 비행, 가출 등
방임	지속적인 배고픔, 나쁜 위상상태, 부적절한 옷차림, 의학적 치료와 치과치료 부족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 수업 중 조는 태도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장시간에 걸친 감독소홀, 비행 또는 도둑질 등

□ 아동학대 신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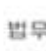



언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p>※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토록 합니다.</p>
어떻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시·군청, 경찰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 -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 -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 8 <p>※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p>



이 포스터는 2017년 제 3회 아이지킴콜 112 콘테스트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용기
아이지킴콜 112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아동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수상함이 느껴진다면 조금만 용기 내어 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지킴콜 112, 아이들을 지키는 용기 있는 신고입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지킴콜112 앱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모바일앱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아동학대' 또는 '아이지킴콜112'를 검색하세요!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결함 보상) 신청 안내

(자료제공: 산업혁신국 에너지산업과 ☎ 211-3595)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뚜껑형) 2005년 9월 이전 생산 제품,
결함 보상 관련 안내드립니다.

□ 추진배경

- 노후된 김치냉장고에서 화재 지속 발생하여, (주)위니아딤채에서 ‘20년 12월부터 자발적으로 제품 무상 수거·부품 교체 등을 시행
 - 제품 판매 후 15년 경과되어 구매자 정보 확인 및 제품의 소재과악 어려움
 - 도내 해당 제품 사용가구를 발굴하여 화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리콜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 실시
- 집중홍보기간 : 2021. 9. 1.(수) ~ 9. 30.(목), 1개월간

□ 개요

- 대상제품 : (주)위니아딤채에서 2005년 9월 이전 생산한 김치냉장고(뚜껑형)
 - 리콜사유 : 부품의 노후화에 의한 합선 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
 - 발굴요령
 - 1) 제품 확인 시, (주)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뚜껑형 구조 및 제조일자 확인
 - 2) 리콜 제품 제보
 - 위니아딤채 누리집(www.winiadimchae.com), 고객상담실(1588-9588)
- ※ 제품 사용자의 직접 신고 외 타인(마을 이·통장,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등)이 제보할 수도 있다. 제보자에게는 (주)위니아딤채에서 제보내용 확인 후 모바일 상품권(5천 원) 증정

□ 홍보내용

- 도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년층 등 ‘정보 취약계층’ 대상 집중 홍보 및 안내 요청



붙임1

리콜(결함 보상) 대상 제품

□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 대상('05. 9월 이전 제조 뚜껑형 모델)

대상 모델	제조기간	방법
<p>뚜껑형 구조 모델</p>  <p>대상 모델 사진(예시)</p>	~'05년 9월 이전	<p>노후 부품 (릴레이 포함 PCB 등) 무상 수거·교체</p>

□ 대상 모델 확인 방법

모델명 및 제조기간 확인 방법	
<p>(모델명)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의 모델명 확인</p> <p>예시) 모델명 : DD-12031D</p>	<p>(모델명 및 제조기간) 제품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형명과 제조기간 확인</p> <p>예시) 형명 : DD-C2205RT(B) 제조년월일 : 2002.10.28.</p>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미리! 미리! 체크

- ① 위니아딤채
- ② 2005년 9월 이전 제조
- ③ 뚜껑형 구조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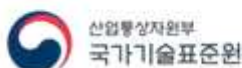
리콜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위니아딤채 고객센터에 접수하여
 A/S기사에게 꼭 확인받으세요.

해당제품의 노후 부품 무상 교체 및 수리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위니아딤채가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김치냉장고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2020.12.2.).

(주)위니아딤채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 1588-9588
 ※ www.winiaald.com/service/free/request

한국소비자원과 사업자정례협의체는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 왜?

“문제 없이 잘 썼는데...”
방심하면 “불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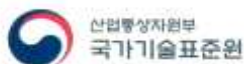


**알아두면
유용한
노후제품
사용 시 팁**



최근 5년간 여러 회사의 다양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1,250여 건. 매년 250여 건에 달하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10년 이상 사용한 냉장고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으세요.
2. 습기와 먼지가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말아주세요.
3. 전원코드가 무거운 물건에 눌리거나 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전원콘센트와 플러그를 완전히 결합시켜 사용하세요.



에너지 절약하고, 경남사랑상품권' 받아주세요!

(자료제공: 산업혁신국 에너지산업과 ☎ 211-3574)

그린뉴딜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가정에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경남도의 에너지 절감 시책'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대상* 중 경남DR(Demand Response) 및 국민DR 신청 세대

*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대상(스마트 미터 무상교체)

- ① 개별세대와 한전이 직접 계약하지 않고 인력 검침중인 아파트의 기계식 또는 전자식 전력량계(재개발·재건축 예정 제외)
*시공업체(누리플렉스) 현장실사 후 확정
- ② 필수 제공 동의서 : 계약서(입주자대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입주민), 국민DR, 경남DR 참여 동의서

- 사업내용 : 스마트 미터 무상교체, 도민 참여형 에너지 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실시간 에너지사용정보 제공과 경남DR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마일리지 적립(회당 2.5천원) 및 경남사랑상품권 전환 지급(최소 발행단위 5천원)

□ 경남DR 운영계획

- 감축발령 횟수 : 국민DR 포함 주 1회 이상 * 월4회 정도
 - 발령기준 : 전력수급비상 준비 또는 관심단계, 도내 미세먼지등 '나쁨' 이상 예상 될 때 등
 - 지급금액/방법 : 2,500원(회당) 마일리지 적립 및 경남사랑상품권 전환 지급(최소 발행단위 5천원)
 - 성공기준 : 고객기준부하(CBL*) 기준 10% 이상 절감 시
- * CBL(Customer Baseline Load) : 최근 평일 6일을 참고일로 하여, 4일을 유사일로 MID(4/6)방식과 최근 평일 10일을 참고로 하고 8일을 유사일로 하는 MID(8/10)방식을 도입하여 세대별 감축량을 산출
- 경남DR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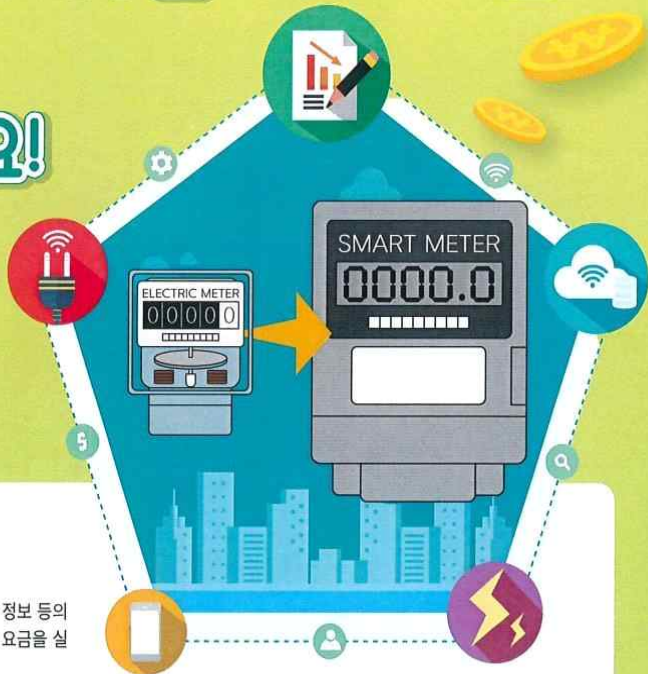


□ 홍보내용

-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민을 대상으로 많은 도민들이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 요청

스마트계량기로 바꾸면 전기도 줄이고, 돈도 벌수있어요!

66 아파트 노후계량기를
스마트계량기(AMI)로
무상교체 해드립니다. 99



01 스마트계량기란??

'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AMI)라고 부르는데요,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해 전기 사용량과 시간대별 요금 정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보 소비자가 전기 사용량과 예상 요금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02 교체고객에 한해서 경남DR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남DR : 경상남도에서 과도한 전력소비발생 등으로 사용자에게 전기사용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고 사용자는 전기소비를 줄이고 이에 따른 보상을 얻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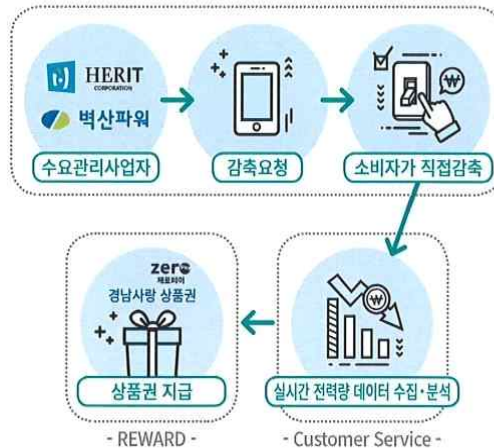
구분	비고
참여가능고객	• AMI 교체 설치 대상 중 경남DR 및 국민DR 신청 세대 • 스마트폰 소유자 (신청자와 핸드폰 명의자가 동일해야 상품권 지급 가능)
감축지속시간	• 1시간
감축지시 발령 사전안내	• 감축 30분 전 감축지시 발령
감축발령 시간	• 평일 6시~21시
감축발령 횟수	• 2021. 5월부터 ~ 12월 까지 참여 가능 • 경남DR과 국민DR을 포함하여 주 1회 이상
급전지시 발령 요건	• 직전 동 기간 전력수급 대책 기간의 최대전력 갱신하거나 예상될 때 • 수급상황이 급변하여 전력부하감축이 필요할 때 • 미세먼지 등급 '나쁨' 이상 예상 될 때 • 서비스 운영을 위해 수요감축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등
감축보상	• 경남DR 실적금 : 감축시간에 CBL대비 10% 이상 절감 시 2,500원/1회 해당하는 마일리지 적립 후 경남사랑상품권으로 교환(매회참여가능)

03 CBL(Customer Baseline Load)이란?

"고객 평균 전력사용량"을 뜻하는 용어로, 미션 수행 시 감축하는 전력 양의 비교 기준이 됩니다.

본 사업에서의 CBL 측정방식 : 최근 평일 6일을 참고일로 하여, 4일을 유사일로 mid(4/6)방식과, 최근 평일 10일을 참고일로 하고 8일을 유사일로 하는 mid(8/10)방식을 도입하여 세대별 감축량을 산출

- DR(Trade in the Electricity Market) -



문의처

스마트계량기 교체문의 : 누리플렉스 T. 02-781-0606

경남DR운영문의 : 헤리트 T. 031-606-7150, 벽산파워 T. 02-767-6436

경남 마산 로봇랜드 방문·이용 및 홍보 협조

(자료제공 : 미래전략국 전략사업과 ☎ 055-211-4165)

세계 최초 로봇 테마파크인 경남 마산로봇랜드('19. 9. 7. 개장)에 도내 지역 주민·기업체의 적극적인 방문·이용 및 홍보를 통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북반동리 일원(1,259,890㎡)
- 사업기간 : 2009 ~ 2022년 *1단계 개장 2019. 9. 7.
- 사 업 비 : 7,000억원(국비 560, 도비 1,000, 시비 1,100 민자 4,340)
- 단계별 사업내용
 - 1단계 : (공공)R&D센터, 컨벤션센터, 전시·체험시설 / (민간)테마파크
 - 2단계 : (민간)호텔, 콘도 등 관광 숙박시설 ※조성예정

□ 주요시설

- (테마파크) 공공부문 로봇 전시·체험시설과 민간부문 놀이기구로 구성
 - (공공) 로봇 전시·체험 19개 콘텐츠(우주, 해양, 산업 로봇 등)
 - (민간) 놀이기구 22종(65m 자이로드롭, 수직하강 롤러코스터 등)
- (컨벤션센터) 로봇 전시·홍보·판매 행사 및 각종 회의 개최(연면적 6,449㎡)
 - (전시장 1개소) 기업 및 공공기관 전시·홍보 행사, 경진대회 등
 - (회의실 2개소) 공공기관 및 기업체 워크숍, 회의, 교육 공간 활용
- (R&D센터) 로봇 기업 연구·개발 및 테스트 공간(지상 3~4층, 3개동)
 - 입주기업에 대해 심사 후 연구개발 자금 지원(1억 원 이내)

□ 협조사항

- 경남 마산로봇랜드 적극 방문 및 홍보 협조
 - 주민, 공무원, 기업체, 학교 등 대상 테마파크 방문 및 컨벤션센터 대관
 - 지역 소재 로봇 기업·단체 대상 로봇 R&D센터 입주 홍보

참 고

로봇랜드 시설별 상세내역

□ 주요시설 전경



테마파크



로봇연구센터



로봇컨벤션센터

□ 이용안내

※ 이용문의 : 경남로봇랜드재단(055-711-2123)

○ 테마파크 운영시간 : (동절기) 10:00 ~ 18:00 (계절별 탄력 운영)

구 분		어른	청소년	어린이	비 고
개 인	종일권(1일)	35,000원	31,000원	27,000원	<주요 할인혜택> - 비씨카드50%, 창원시민(20%), - 경로우대, 임산부, 다문화가정 ※상세 사항 홈페이지 참조 (www.robot-land.co.kr)
	오후권(2시이후)	26,000원	23,000원	20,000원	
단 체	(15인 이상)	23,000원	20,000원	18,000원	
입장권	(공공관 이용가능)	16,000원	13,000원	10,000원	
놀이기구 1회 탑승권		6,000원			

○ 컨벤션센터 대관료

(부가세 포함)

구 분	1일 대관료	관리비예치금	
전 시 장	3,161,400원	대관료의 30%	
중회의실 (A+B)	2,280,100원	회 의	-
		그 외 행사	대관료의 30%

* 식음 케이터링 제공 및 시내 숙박시설 연계 가능

□ 테마파크 상세시설

○ 공공부문 : 로봇 테마 콘텐츠 16종 + 신규 콘텐츠 3종('21.10월 도입)



○ 민간부문 : 놀이시설 22종



○ 식당 카트 및 편의시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자료제공: 농정국 농업정책과 ☎ 211-6223)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이란?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업인들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 활동 보상을 위해 '22년 신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장소 : '22. 2월중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 30만원/인/연, 상반기(6월 중) 지급
- 지급수단 : 시·군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농협체크카드로 충전 지급

○ (지급대상)

- 기본요건 :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법인은 지급대상 아님)
- 세부요건
 - 거주 : '21.1.1.~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종사 : 「경영주」는 '21.1.1.~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영주로 등록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의 조건을 만족하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
- 지급대상 경작지 등
 - 농(임)업 : 도내 및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 관할 연접 시·군
 - 어업 : 도내 면허, 허가, 신고어업권을 가져야 함

○ (지급제외대상)

-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법령위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자
- 미혼인 자녀가 지급대상자와 같은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자

○ (이행조건)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교육 및 마을 공동체 활동

※ 기본형 공익직불금 받는 자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안받는 자는 이행 후 증빙서류 읍면동 제출
(미이행시 지급금액 환수)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은 ?

농어업인들이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보존과 농어촌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경남도와 관할 시·군에서 2022년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연 1회 30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보조금)입니다.

지원신청

- | 지급신청 | 2022년 2월 중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
- | 구비서류 | ① 수당신청서, ② 농어업인수당 지급 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 ③ 이행서약서, ④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⑤ 소득금액증명원(공익직불금 미수령자),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임업)경작사실확인서(농지와 거주지 불일치시), (어업) 허가 면허·신고증명원
- | 지급금액 | 30만원/인/년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급
- | 수당지급 | 자격검증 후 6월중 지급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
- 농협채움카드로 포인트를 지급받으시는 분은 농협채움카드를 사전 발급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기본요건 | 도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법인은 지급대상 아님)

	경영주	공동경영주	지급대상 경직지 등
세부요건	 전년도 1월 1일부터 ~ 수당신청일 까지 계속하여 > 경영주로 등록된 자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 거주자	 수당신청일 까지 >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자	 ▶ 농업업: 도내 및 다른 시·도의 경직지 중 주소지 관할 연립 시·군 ▶ 어업: 경상남도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

지급제외대상

- ①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 ② 법령위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③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 있는 자
- ④ 미혼인 자녀가 지급대상자와 같은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자

이행조건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교육 및 마을 공동체활동

- | 이행기간 | '22년 10월까지 (기본형공익직불금에서 이행한 경우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 ※ 미이행 시 지급금액 환수
- | 교육 | 대면(시·군), 비대면 (온라인:농업교육포털 agriedu.net, 수산교육포털 susanedu.kr)
- | 공동체활동 | 마을 자치회 등을 구성하여 활동(주소지 또는 경직지)
※ 기본형공익직불금 안 받는 자는 이행후 증빙서류 읍·면 제출